

개포프레지던스자이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12.27.**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무주택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의 청약접수도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서류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2항과 3항에 의거 현장접수는 불가합니다.
 - 청약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점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의거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 ⊙ 본 아파트의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며,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및 청약과열 지역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 아파트입니다.
 -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인천(일부)·경기도 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일부)·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제외]
 - 투기과열지구 : 서울특별시·과천시·성남시 분당구·광명시·하남시·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대구광역시 수성구
 - 투기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동대문구, 동작구, 종로구, 중구, 세종시
 - 청약과열지역 : 서울특별시·과천시·성남시·광명시·구리시·안양시 동안구·용인시 수지구 전역 / 하남시
고양시[삼송택지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 주택 지구, 덕은, 킨텍스 1단지 도시개발 지구, 고양관광문화 단지(한류월드) · 남양주시(다산동, 별내동 공공택지) · 화성시(동탄2택지 개발 지구)·광교택지 개발 지구 수원시 팔달구·용인시 기흥구 내-공공택지·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등본 기준)하는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1년 이상(2018.12.27.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하는 신청자가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서울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1순위 청약 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구분하여 접수하오니 청약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되어 제23조 제2항 제7호에 의해 제4조 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 당첨·계약 시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 ⊙ **2019.11.01. 신설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6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출입국사실 증명서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단,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하여 입국 후 7일 이내 동일 국가 재출국 시 계속 거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는 국내 거주로 불인정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이 불가합니다.
 - ※ 단순 3개월 미만의 단기 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 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 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 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 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2 주택 공급 대상자로서 미성년자 요건(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자녀 양육 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주택공급 대상에 포함합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 별표 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 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
 - (주택형 전용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전용 85㎡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 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85㎡ 초과 주택) 주택 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 수의 75% : 무주택세대 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한 자를 우선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 1주택(분양권 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상기 2항과 같이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 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검인 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매각하지 않는 경우는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에 따라 형사상의 처벌 가능합니다.
 4.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 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제565호 부칙 제3조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봅니다.)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 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1. 분양권 등부터 취득에 따라 주택 소유자가 되는 날
 - 권리 구분란에서 “공급계약-준공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계약일,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권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가. 시행일(18.12.11) 전 공급계약된 건
 - 나. 시행일 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된 건
 - 다. 시행일 전 사업 계획 승인(지역주택조합) 신청된 건
 - 라. 시행일 전 관리처분계획 승인(정비 사업) 신청된 건
 - 권리 구분란에서 “전매-준공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잔금지급일
 - ※ “공급계약-준공 후-분양권(입주권)”, “전매-준공 후-분양권(입주권)의 경우 주택으로 등기되므로 엑셀 검색 결과 상 동일 물건이 있는 경우 1주택으로 처리됩니다.
 2. 분양권 등 처분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지 않게 되는 날
 - 권리 구분란에서 “전매-준공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잔금지급일
 -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검색되어 나타났으나 증여, 경매, 공매 등으로 처분된 경우 당사자가 소유했던 공급 계약서에 다른 사람에게 명도 된 날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 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 미터 이하로서 주택 가격이 수도권 1억3천만원(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릅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 2에 의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 및 제8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방식이 변경되어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 별로 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 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인 경우 지역 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 공급 세대수 만큼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인 경우 지역 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유지됩니다.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 정보는 파기 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0%(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를 추첨을 통하여 선정하고,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 없이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 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자(예비입주자 포함)의 입주자 발표일은 일반공급 입주자 당첨 발표일과 같은 날 동, 호수를 포함하여 발표되며,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일 이전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 중복 청약접수 관련
 - 청약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의 당첨만을 인정합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개편으로 인해 청약자 본인은 동일 단지의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 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은 무효 처리하며 또한 투기(청약) 과열 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으로써 동일 단지인 경우 동일세대에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동시 청약은 가능하나 둘 다 당첨될 경우 특별공급은 인정하되 일반공급은 부적격 처리합니다.
 - 동일 주택에 동일인이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개편으로 인한 예외사항 외 청약자(세대주)와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동일 공급유형으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에 각각 청약(특별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일반공급)하여 모두 당첨되는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합니다.
 -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 당첨 인정, 후 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당첨 제한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 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기 분양주택 당첨 여부에 따라 본 아파트의 청약이 제한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포함)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2순위 청약 가능)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과거 5년 이내의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 각목
 -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 및 지역(직장 포함) 주택조합의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3호에 의거 「투기과열지구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및 사업 계획 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지역(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재개발/재건축) 및 사업 계획 승인(지역주택조합) 인가일부 5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며, 본 아파트의 당첨 또는 계약 체결로 인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조합원 분양신청 불가/현금청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사업 계획 승인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입주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2순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각호(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 가목 및 제8호)의 주택, 제47조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재당첨 제한 기간 : 과밀억제권역 85㎡ 이하 - 당첨 일로부터 5년, 85㎡ 초과 - 당첨 일로부터 3년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85㎡ 이하 - 당첨 일로부터 3년, 85㎡ 초과 - 당첨 일로부터 1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7호 가목의 주택(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 - 당첨 일로부터 5년
 - 청약 제한 사항(과거 당첨 사실 등) 조회 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따라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 서비스(www.ap2you.com) 또는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 제한 기간 : 당첨 일로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은 1년), 위축 지역은 3개월로 해당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모든 지역 2순위 접수방법 변경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7.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10년 이상 장기 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 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 → 10년 이상 장기 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합니다.)
 - 본 주택의 해당 순위(특별공급·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 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기타 지역) 거주자로 봅니다.
- 분양권 전매 제한
 - 특별공급 주택 :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및 동법 별표3 제5호에 의거 최초로 주택 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일반공급 주택 :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최초로 주택 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및 청약과열 지역으로 지정되어 담보 인정 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제한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9억원 이하 분양가인 세대의 경우 중도금 대출 유이자 조건으로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 가능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 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을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단,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 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호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 공급 신청(특별 및 일반공급)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 배정 신청 비 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본 아파트는 최저층이 2층인 주택형이 있으므로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 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 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 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 2항에 의거 계약 취소 주택(불법 전매 등으로 계약 해지된 주택)이 20세대 또는 20호 이상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일 것
 2. 세대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않을 것
 - 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 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 기간
 - 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 제한 기간
- 계약 취소 주택(불법 전매 등으로 계약 해지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 4항에 따라 계약 취소 주택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비입주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 2항에 따라 선정합니다.
-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는 각 사업주체들과 협의하여 관할 지역에 있는 계약 취소 주택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통합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 2항에 따라 한꺼번에 공급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 취소 주택이 20세대 또는 20호 미만인 주택단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6조에 따라 공급 질서 교란 자에 대해서는 5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 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 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 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정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공급 질서 교란 행위자)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이후에도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
 -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 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 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제한 및 전매금지, 가점제 재당첨 제한, 예비입주자 선정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 안내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 발표	자격검증 서류제출	계약 체결
		해당 지역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거주자)	기타 지역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				
일 정	1월 02일(목)	1월 03일(금)	1월 06일(월)	1월 07일(화)	1월 13일(월)	1월 14일(화)~1월 19일(일)	1월 28일(화)~1월 30일(목)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www.apt2you.com) 로그인후 조회 가능		청약신청 자격서류 지참하여 견본주택 방문	계약서류 지참하여 견본주택 방문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 PC : www.apt2you.com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 견본주택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19 자이갤러리 1층 (10:00~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 견본주택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19 자이갤러리 1층 (10:00~16:00) 	

※ 고령자 또는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 22152호(2019.12.2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89번지 일원(개포주공4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7층~35층 35개동, 총 3,375세대(조합원분 2,885세대, 임대주택 220세대, 보류지 15세대 포함) 중 일반공급 25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5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5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1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2세대 포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구분	주택관리번호 (아파트코드)	모델	주택형 (주거전용면적)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 세대수	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저층우선 배정세대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특별공급						
												일반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계		
민영 주택	2019001124-01	01	39.9450	39	39.9450	19.9224	59.8674	41.7097	101.5771	23.7978	54	5	5	11	2	23	31	5
	2019001124-02	02	45.8769	45	45.8769	22.5696	68.4465	47.9037	116.3502	27.2081	19	-	-	-	-	-	19	3
	2019001124-03	03	49.9528	49	49.9528	24.3495	74.3023	52.1597	126.4620	29.5358	27	-	-	-	-	-	27	2
	2019001124-04	04	59.9751A	59A	59.9751	19.5422	79.5173	62.6248	142.1421	31.6088	75	-	-	-	-	-	75	13
	2019001124-05	05	59.8363B	59B	59.8363	19.5692	79.4055	62.4799	141.8854	31.5644	8	-	-	-	-	-	8	4
	2019001124-06	06	59.9125C	59C	59.9125	19.5536	79.4661	62.5596	142.0257	31.5885	2	-	-	-	-	-	2	1
	2019001124-07	07	78.7747A	78A	78.7747	23.8143	102.5890	82.2551	184.8441	40.7800	15	-	-	-	-	-	15	10
	2019001124-08	08	78.7295C	78C	78.7295	23.9940	102.7235	82.2078	184.9313	40.8335	1	-	-	-	-	-	1	-
	2019001124-09	09	84.5978A	84A	84.5978	26.1931	110.7909	88.3355	199.1264	44.0404	24	-	-	-	-	-	24	-
	2019001124-10	10	102.7636A	102A	102.7636	30.4893	133.2529	107.3040	240.5569	52.9692	1	-	-	-	-	-	1	-
	2019001124-11	11	102.5776B	102B	102.5776	31.6304	134.2080	107.1097	241.3177	53.3489	11	-	-	-	-	-	11	4
	2019001124-12	12	114.8148A	114A	114.8148	34.1086	148.9234	119.8876	268.8110	59.1984	1	-	-	-	-	-	1	-
	2019001124-13	13	114.8054B	114B	114.8054	34.5491	149.3545	119.8777	269.2322	59.3698	10	-	-	-	-	-	10	1
	2019001124-14	14	114.9973C	114C	114.9973	34.0029	149.0002	120.0782	269.0784	59.2289	7	-	-	-	-	-	7	3
합계											255	5	5	11	2	23	232	46

※ 저층 우선 배정세대(46세대)는 일반분양 총 공급세대(255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m², 원)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공급 세대 수	동별 (라인별)	층구분	세 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20%)		중도금(60%)						잔금(2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10%)	2차(10%)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지정일		
								계약시	2020-03-02	2020-08-05	2021-01-06	2021-06-02	2021-11-03	2022-04-06	2022-09-07			
39	54	401동 4,5,6,7,8,9,10호 432동 5,6,7,8,9,10호 433동 1,2,3,5,6,7호	1층	5	489,770,000	241,230,000	731,0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146,200,000	
			2층	4	508,530,000	250,470,000	759,00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151,800,000
			3층	5	521,260,000	256,740,000	778,000,000	77,800,000	77,800,000	77,800,000	77,800,000	77,800,000	77,800,000	77,800,000	77,800,000	77,800,000	77,800,000	155,600,000
			4층	7	533,990,000	263,010,000	797,000,000	79,700,000	79,700,000	79,700,000	79,700,000	79,700,000	79,700,000	79,700,000	79,700,000	79,700,000	79,700,000	159,400,000
			5~9층	27	546,720,000	269,280,000	816,000,000	81,600,000	81,600,000	81,600,000	81,600,000	81,600,000	81,600,000	81,600,000	81,600,000	81,600,000	81,600,000	163,200,000
			10~12층	6	558,110,000	274,890,000	833,000,000	83,300,000	83,300,000	83,300,000	83,300,000	83,300,000	83,300,000	83,300,000	83,300,000	83,300,000	83,300,000	166,600,000
45	19	401동 1,11,12,13호 434동 1,2,3,4호	1층	3	603,670,000	297,330,000	901,000,000	90,100,000	90,100,000	90,100,000	90,100,000	90,100,000	90,100,000	90,100,000	90,100,000	90,100,000	180,200,000	
			2층	1	621,760,000	306,240,000	928,000,000	92,800,000	92,800,000	92,800,000	92,800,000	92,800,000	92,800,000	92,800,000	92,800,000	92,800,000	185,600,000	
			3층	2	632,480,000	311,520,000	944,000,000	94,400,000	94,400,000	94,400,000	94,400,000	94,400,000	94,400,000	94,400,000	94,400,000	94,400,000	188,800,000	
			4층	1	643,870,000	317,130,000	961,000,000	96,100,000	96,100,000	96,100,000	96,100,000	96,100,000	96,100,000	96,100,000	96,100,000	96,100,000	192,200,000	
			5~9층	8	654,590,000	322,410,000	977,000,000	97,700,000	97,700,000	97,700,000	97,700,000	97,700,000	97,700,000	97,700,000	97,700,000	97,700,000	195,400,000	
			10~17층	4	665,980,000	328,020,000	994,000,000	99,400,000	99,400,000	99,400,000	99,400,000	99,400,000	99,400,000	99,400,000	99,400,000	99,400,000	198,800,000	
49	27	432동 1,2,3,4호	1층	2	667,320,000	328,680,000	996,000,000	99,600,000	99,600,000	99,600,000	99,600,000	99,600,000	99,600,000	99,600,000	99,600,000	99,600,000	199,200,000	
			2층	2	686,750,000	338,250,000	1,025,000,000	102,500,000	102,500,000	102,500,000	102,500,000	102,500,000	102,500,000	102,500,000	102,500,000	102,500,000	205,000,000	
			4층	3	710,870,000	350,130,000	1,061,000,000	106,100,000	106,100,000	106,100,000	106,100,000	106,100,000	106,100,000	106,100,000	106,100,000	106,100,000	212,200,000	
			5~9층	14	722,930,000	356,070,000	1,079,000,000	107,900,000	107,900,000	107,900,000	107,900,000	107,900,000	107,900,000	107,900,000	107,900,000	107,900,000	215,800,000	
			10~12층	6	734,320,000	361,680,000	1,096,000,000	109,600,000	109,600,000	109,600,000	109,600,000	109,600,000	109,600,000	109,600,000	109,600,000	109,600,000	219,200,000	
59A	75	402동 3,4,5호 424·427동 1,2,3,5,6호 430동 4,5호 431동 5,6호 435동 1,2,4,5,6호	1층	11	760,450,000	374,550,000	1,135,000,000	113,500,000	113,500,000	113,500,000	113,500,000	113,500,000	113,500,000	113,500,000	113,500,000	113,500,000	227,000,000	
			2층	22	785,910,000	387,090,000	1,173,000,000	117,300,000	117,300,000	117,300,000	117,300,000	117,300,000	117,300,000	117,300,000	117,300,000	117,300,000	234,600,000	
			3층	16	803,330,000	395,670,000	1,199,000,000	119,900,000	119,900,000	119,900,000	119,900,000	119,900,000	119,900,000	119,900,000	119,900,000	119,900,000	239,800,000	
			4층	14	820,080,000	403,920,000	1,224,000,000	122,400,000	122,400,000	122,400,000	122,400,000	122,400,000	122,400,000	122,400,000	122,400,000	122,400,000	244,800,000	
			5~6층	12	836,830,000	412,170,000	1,249,000,000	124,900,000	124,900,000	124,900,000	124,900,000	124,900,000	124,900,000	124,900,000	124,900,000	124,900,000	249,800,000	
59B	8	402동 2호 424·427동 4호 435동 3호	1층	3	763,130,000	375,870,000	1,139,000,000	113,900,000	113,900,000	113,900,000	113,900,000	113,900,000	113,900,000	113,900,000	113,900,000	113,900,000	227,800,000	
			2층	3	788,590,000	388,410,000	1,177,000,000	117,700,000	117,700,000	117,700,000	117,700,000	117,700,000	117,700,000	117,700,000	117,700,000	117,700,000	235,400,000	
			3층	2	805,340,000	396,660,000	1,202,000,000	120,200,000	120,200,000	120,200,000	120,200,000	120,200,000	120,200,000	120,200,000	120,200,000	120,200,000	240,400,000	
59C	2	402동 1호	2층	1	785,240,000	386,760,000	1,172,000,000	117,200,000	117,200,000	117,200,000	117,200,000	117,200,000	117,200,000	117,200,000	117,200,000	234,400,000		
			3층	1	803,330,000	395,670,000	1,199,000,000	119,900,000	119,900,000	119,900,000	119,900,000	119,900,000	119,900,000	119,900,000	119,900,000	119,900,000	239,800,000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공급 세대 수	동별 (라인별)	층구분	세 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20%)		중도금(60%)						잔금(2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10%)	2차(10%)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지정일			
								계약시	2020-03-02	2020-08-05	2021-01-06	2021-06-02	2021-11-03	2022-04-06	2022-09-07				
78A	15	403·407·416동 1,3,4호 405동 3호 415·423동 1,4호	1층	9	976,860,000	481,140,000	1,458,000,000	145,800,000	145,800,000	145,800,000	145,800,000	145,800,000	145,800,000	145,800,000	145,800,000	145,800,000	291,600,000		
			2층	6	1,009,690,000	497,310,000	1,507,000,000	150,700,000	150,700,000	150,700,000	150,700,000	150,700,000	150,700,000	150,700,000	150,700,000	150,700,000	150,700,000	301,400,000	
78C	1	405동 1호	1층	1	978,200,000	481,800,000	1,460,000,000	146,000,000	146,000,000	146,000,000	146,000,000	146,000,000	146,000,000	146,000,000	146,000,000	146,000,000	292,000,000		
84A	24	404·411동 2,3,4호 406·410동 5,6호 408동 1,4,5,6호 409동 1,2,4,5,6호 425동 3호 426동 1,3호 428동 2,3호	1층	24	1,053,910,000	519,090,000	1,573,000,000	157,300,000	157,300,000	157,300,000	157,300,000	157,300,000	157,300,000	157,300,000	157,300,000	157,300,000	314,600,000		
102A	1	417동 4호	1층	1	1,252,900,000	617,100,000	1,870,000,000	187,000,000	187,000,000	187,000,000	187,000,000	187,000,000	187,000,000	187,000,000	187,000,000	187,000,000	374,000,000		
102B	11	414동 1,2호 417동 1,2호	1층	4	1,219,400,000	600,600,000	1,820,000,000	182,000,000	182,000,000	182,000,000	182,000,000	182,000,000	182,000,000	182,000,000	182,000,000	182,000,000	182,000,000	364,000,000	
			2층	4	1,262,280,000	621,720,000	1,884,000,000	188,400,000	188,400,000	188,400,000	188,400,000	188,400,000	188,400,000	188,400,000	188,400,000	188,400,000	188,400,000	376,800,000	
			3층	3	1,291,090,000	635,910,000	1,927,000,000	192,700,000	192,700,000	192,700,000	192,700,000	192,700,000	192,700,000	192,700,000	192,700,000	192,700,000	192,700,000	192,700,000	385,400,000
114A	1	413동 1호	1층	1	1,384,890,000	682,110,000	2,067,000,000	206,700,000	206,700,000	206,700,000	206,700,000	206,700,000	206,700,000	206,700,000	206,700,000	206,700,000	413,400,000		
114B	10	419동 2호	2층	1	1,388,910,000	684,090,000	2,073,000,000	207,300,000	207,300,000	207,300,000	207,300,000	207,300,000	207,300,000	207,300,000	207,300,000	207,300,000	207,300,000	414,600,000	
			3층	1	1,420,400,000	699,600,000	2,120,000,000	212,000,000	212,000,000	212,000,000	212,000,000	212,000,000	212,000,000	212,000,000	212,000,000	212,000,000	212,000,000	212,000,000	424,000,000
			4층	1	1,452,560,000	715,440,000	2,168,000,000	216,800,000	216,800,000	216,800,000	216,800,000	216,800,000	216,800,000	216,800,000	216,800,000	216,800,000	216,800,000	216,800,000	433,600,000
			5~9층	5	1,484,720,000	731,280,000	2,216,000,000	221,600,000	221,600,000	221,600,000	221,600,000	221,600,000	221,600,000	221,600,000	221,600,000	221,600,000	221,600,000	221,600,000	443,200,000
			10~11층	2	1,517,550,000	747,450,000	2,265,000,000	226,500,000	226,500,000	226,500,000	226,500,000	226,500,000	226,500,000	226,500,000	226,500,000	226,500,000	226,500,000	226,500,000	453,000,000
114C	7	413·418·419동 3호	1층	1	1,384,890,000	682,110,000	2,067,000,000	206,700,000	206,700,000	206,700,000	206,700,000	206,700,000	206,700,000	206,700,000	206,700,000	206,700,000	206,700,000	413,400,000	
			2층	3	1,432,460,000	705,540,000	2,138,000,000	213,800,000	213,800,000	213,800,000	213,800,000	213,800,000	213,800,000	213,800,000	213,800,000	213,800,000	213,800,000	213,800,000	427,600,000
			3층	3	1,465,290,000	721,710,000	2,187,000,000	218,700,000	218,700,000	218,700,000	218,700,000	218,700,000	218,700,000	218,700,000	218,700,000	218,700,000	218,700,000	218,700,000	437,400,000

■ **공통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 및 주거공용면적 합계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급면적 및 대지의 대지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에 의거 주택형 표기 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서울시 인·허가 기준에 따른 발코니 변화로 인해, 같은 주택형이라도 발코니 설치 내용 및 서비스 면적이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형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는 전 세대 비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발코니 확장형은 추가 선택품목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비용이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가구, 가전 등 유상 옵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 일을 기준으로 하고, 연체료 납부 시 토요일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및 유상 옵션대금(2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시 은행 전산망 장애 등으로 오류가 발생하여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료가 산정될 수 있으므로 납부일 은행 업무 시간 내 납부를 권장합니다.
- 선납 할인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됩니다.(선납 할인은은 공급 계약서 참고 요망)
-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 지정 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할인하며, 입주 지정 기간에는 잔금에 대한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기준 공정 시점 이후 중도금 납입일자는 예정 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소유권보존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중 일부는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대출 취급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9억원 이하 분양가인 주택형에 한합니다.)
-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대출 부적격 사유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 부과됩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 보증 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 보증 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 건설 사업 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 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 없이 청약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됩니다.
- 전산 검색 결과 당첨 사실, 이중 당첨 및 주택 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 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 지역은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함(주민등록표 등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 및 거주 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 체결 및 계약 체결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 세대)

주택형	39㎡									
구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장애인	국가보훈처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거주자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인천광역시 거주자	소득기준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우선공급(75%)	일반공급(25%)	
	1	1	1	1	1	3	2	9	2	2
합계	5				5			11		2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공급 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 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 공급(우선 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접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2항에 따라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등)의 청약 접수는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합니다.(은행 창구 접수 불가) • 인터넷 청약접수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하고 청약접수일에 APT2you 사이트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관련 증빙 서류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 건분주택 현장접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9조 2항과 3항에 의거 불가합니다. • 청약접수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 시간 : APT2you 홈페이지, 08:00~17:30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 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 기간, 무주택 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 지역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인 서울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단,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관계 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 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기타 지역) 거주자로 봄.(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 요건 충족 시 해당 지역 청약 가능)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 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내 무주택세대 구성원(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특별공급을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중복 당첨(예비 포함) 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계약 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 -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 공급 신청자 나. 주택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 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서 주택 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 공급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 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 공급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합니다.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제외)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재당첨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본 아파트는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아래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청약과열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신중히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 기간 : 과밀억제권역 85㎡ 이하 - 당첨 일로부터 5년, 과밀억제권역 85㎡ 초과 - 당첨 일로부터 3년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85㎡ 이하 - 당첨 일로부터 3년, 85㎡ 초과 - 당첨 일로부터 1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7호 가목의 주택(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 - 당첨 일로부터 5년 ※ 청약 제한 사항(과거 당첨 사실 등) 조회 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따라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 서비스(www.ap2you.com) 또는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낙첨자 잔여세대 배정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 접수 유형별, 주택형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동일 주택형 내에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을 통하여 공급하며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접수 유형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단,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계약 취소, 부적격 세대로 확정되어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되며, 예비 입주자 계약 이후에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별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신청 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국가유공자), 3호(국가보훈대상자), 8호(장기 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장애인, 중소기업 인력 지원특별법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중 아래 특별공급별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으신 무주택세대 구성원 청약자격요건 :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 추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장애인 : 서울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② 국가유공자, 장기 복무 제대군인 등 : 서울남부보훈 지청 복지과 ③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 운영과 ④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 서울지방 중소 벤처 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 세대수 : 전용 85㎡ 이하 주택형별 건설량의 10% 범위 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수 배정)에서 제외]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1년 이상(2018.12.27.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자,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 이상(태아 또는 입양아 포함)을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청약자격요건 :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녀 3명 이상이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 등본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단, 임신 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됩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공급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 세대수 : 전체 주택형별 건설량의 10% 범위 내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5조에 따라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1년 이상(2018.12.27.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자에 대상 세대수의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 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우선 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에게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구분	신청 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신혼부부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1년 이상 (2018.12.27.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자,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합니다.(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청약자격요건 :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 출산은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 진단서, 입양의 경우입양관계 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 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 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 기준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우선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세대의 75%:「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100%(배우자 포함 120%) 이하인 자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세대의 25%:「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120%(배우자 포함 130%) 이하인 자 ※ 우선 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는 일반공급세대에 포함하여 경쟁합니다.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 세대수 : 전용 85㎡ 이하 주택형별 건설량의 20% 범위 내 우선 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혼인 기간 및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 공급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고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혼인 기간 중 출산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자(임신 중 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 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제2순위(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자녀 -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당첨자 선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인 서울특별시 1년 이상(2018.12.27.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자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 수가 많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전혼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미성년 자녀수(태아를 포함)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 부부 또는 입양 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에게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 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청약자격요건 : 청약 1순위 요건 충족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은 1순위 청약 제한이 적용되므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원 중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 세대수 : 전체 주택형별 건설량의 3% 범위 내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당첨자 선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인 서울특별시 1년 이상(2018.12.27.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자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 ※ 가점제 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의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로 산정합니다. - 가점 기준표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 가점 산정 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배 점 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 (1)	40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4명	35	
		3명	30	
영유아 자녀수 (2)	15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2명	10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가족	5	
무주택기간 (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만19세부터 기간을 적용)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그 기간부터 산정)부터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인천·경기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함.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공급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합니다.

(3) : 한 부모가족의 경우 한 부모가족 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 소유 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 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 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 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구분		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통계청 고시)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5,401,814원	6,165,202원	6,699,865원	7,348,891원	7,997,917원	8,646,943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6,482,177원	7,398,242원	8,039,838원	8,818,669원	9,597,500원	10,376,332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2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 120% 이하	5,401,815원 ~6,482,177원	6,165,203원 ~7,398,242원	6,699,866원 ~8,039,838원	7,348,892원 ~8,818,669원	7,997,918원 ~9,597,500원	8,646,944원 ~10,376,332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초과 ~ 13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6,482,178원 ~7,022,358원	7,398,243원 ~8,014,763원	8,039,839원 ~8,709,825원	8,818,670원 ~9,553,558원	9,597,501원 ~10,397,292원	10,376,333원 ~11,241,026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1인당 평균 소득(649,026)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 수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함)으로 하되,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신청자의 성년인 직계 존·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합니다.
- ※ 월평균 소득은 연간 소득÷근무 월수를 말하며, 연간 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 급여액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 금액증명서 상의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 금액증명서 원본상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 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상의 근무 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휴직 등의 경우 소득 산정 방법(건강의료보험증 서상 직장가입자)
 - 전년도에 휴직 등(파업 등의 이유로 실제 근무를 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포함)으로 인해 소득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의 소득을 추정하여 전년도 소득을 산정합니다.
 - 전년도 중 일부 기간만 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추정합니다.
 - 전년도 전체에 걸쳐 휴직 등을 하고 당해 연도에 복직 등(정상적으로 근로에 종사하게 된 경우)을 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 근로자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를 징구하여 월평균 소득을 추정합니다.
 - 월평균 소득의 추정이 불가능한 자는 본인의 재직증명서와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결정 방법 및 유의사항**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유형별 선정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동일 주택형 내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접수 유형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단,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APT2you)을 원칙으로 합니다. [인터넷 청약 가능 시간(아파트투유 www.ap2you.com 08:00~17:30)] - 인터넷 청약(APT2you) 신청 시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접수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당첨자로 선정된 후 자격 증빙서류 대조, 검증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 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 배우자, 세대 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 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단, 2018.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혼 기간 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특례에 따라 신혼 기간 내 주택 소유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해당]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동일 주택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 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 처리됩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 취소 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및 동법 별표3 제5호에 의거 최초로 주택 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p>신청 자격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1년 이상(2018.12.27.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형제자매 부양) 중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외 동포(재외 국민, 외국 국적 동포) 및 외국인은 1순위 청약 불가하며, 2순위 청약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 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기타 지역) 거주자로 봅니다.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24개월) 입주자 저축 요건 및 해당 주택 건설지역(서울시 1년 이상)에 거주 요건 충족 시 해당 지역 청약 가능]
<p>청약신청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 신청 시 청약 순위별 자격요건,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금액”,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청약 신청 유의사항”을 확인 바랍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재당첨제한 주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각호(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 가목 및 제8호)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 기관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서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기 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주택에 청약이 제한됩니다. • 재당첨 제한 기간 : 과밀억제권역 85㎡ 이하 - 당첨 일로부터 5년, 85㎡ 초과 - 당첨 일로부터 3년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85㎡ 이하 - 당첨 일로부터 3년, 85㎡ 초과 - 당첨 일로부터 1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7호 가목의 주택(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 - 당첨 일로부터 5년 • 청약접수방식 : 주택형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해당 지역), 1순위(기타 지역),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며,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에 의거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2)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중복 청약접수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개편으로 인해 청약자 본인은 동일단지의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 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 당첨시 일반공급은 무효처리 하며, 또한 투기(청약)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으로써 동일단지인 경우 동일세대에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동시 청약은 가능하나 둘 다 당첨될 경우 특별공급은 인정하되 일반공급은 부적격 처리됩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 주택 포함)에 대하여 중복신청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하여 2건 이상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1세대 2건 이상 중복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재당첨제한 위반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주택의 당첨만 인정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변경요건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 청약예금 신청 주택규모 변경(큰 주택규모 청약예정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해당면적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부금 변경(청약예금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저축 변경(청약예금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 지역간 전입[모집공고 당일까지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 지역 전입 시 1순위(기타) 청약접수 가능합니다. (단, 1순위(해당 지역)에서 600% 초과 청약접수 된 주택형은 1순위(기타 지역)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예치금액 충족(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액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세대주 변경(모집공고 당일까지 변경 시 1순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간 예치금액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청약접수 당일까지 차액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당첨 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제한기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부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거주구분
민영주택	1순위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됩니다. (가점제 100%)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점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추첨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부양가족수에는 제외됩니다.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85㎡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됩니다. (가점제 50%, 추첨제 50%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점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추첨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를 우선 선정)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1분양권 등" 소유 시 기존 소유 1주택 처분 조건 승낙(서약)불가합니다.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한 자 중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제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순위자로서 다음 중 1에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합니다. (2순위로 청약 가능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 2주택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순위	전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청약제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 불가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에 1년 이상(2018.12.27 이전부터 계속 거주)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 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하여 접수하오니 청약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별표2]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 [별표1]의 1

구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세대원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자 - 주택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주택 소유에 포함되며,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소형 저가 주택을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함. <p>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합니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습니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함)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합니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p>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으로 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일정기간 이상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며, 외국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고,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일정기간 이상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주택공급 신청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p> <p>3) 미혼자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합니다. - 단, 만30세 이상인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p> <p>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 신청 시 자동 부여한다.</p>
④ 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p>① 및 ②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릅니다.</p>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 [별표1]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축물대장 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 및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배우자 포함)의 경우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2년 이상 ~ 3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 청약통장 -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3년 이상 ~ 4년 미만	5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4년 이상 ~ 5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5년 이상 ~ 6년 미만	7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6년 이상 ~ 7년 미만	8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7년 이상 ~ 8년 미만	9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8년 이상 ~ 9년 미만	10	15년 이상	17	
총점	84					
비고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p>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선정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 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 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따른 최하층의 주택 배정 신청자는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단, 최하층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 층별,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 접수하되, 선순위 신청 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 동일 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거주 신청자가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신청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가점제 당첨자 선정 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 [별표1] 2 나목)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 - 전용면적 85㎡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 공급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 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 수의 75% : 무주택세대 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 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한 자를 우선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p>※ 단, "1분양권 등" 소유 시 기존 소유 1주택 처분 조건 승낙(서약) 불가합니다.</p>
<p>예비입주자 선정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 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인 경우 지역 구분 없음) 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 공급 세대수 만큼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인 경우 지역 구분 없음) 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 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 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발표하며 당첨 사실을 본인이 개별적으로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rt2you.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당첨자로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 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 취소 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정당 당첨자는 무효 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건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그 기간 이내에 공급유형별 최초 예비입주자 공급(추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기간이 경과하여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 정보는 파기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 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 방법 및 유의사항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수와 미계약 동·호수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세대 발생 및 소명 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주택형 발생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추첨) 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미방문 시 예비입주자 추첨 참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택 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및 입주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입주권 등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 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은 건축물 관리 대장 등본 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 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 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검색 대상** : 공급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및 입주권 등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부칙 제565호 제3조)
 1.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 사업) 또는 사업 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2.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 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 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주택 및 분양권 등 처분 기준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①, ②의 처리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 등본 : 처리일
 -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 체결일
 - 2의3. 제2조 제7호의2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 계약서
 -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 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 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한 자는 제외함)
 - ⑥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⑦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⑧ 적법한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중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 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당 지자체의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나 질의회신 등) 하여야 한다.
 - * 단,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나 건축물대장 등본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회신 내용은 무허가 건물을 확인하는 내용이 아님.
 - ⑨ 소형·저가 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 "소형·저가 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아래 각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이 수도권 1억3천만원(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말함.
 - 단,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함)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 가격에 따름.
 -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 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 ⑩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한다)
 - *분양권 주택 소유 판단 예시(경쟁 발생 여부는 최초 접수 경쟁률로 판단)
 - 접수 결과 경쟁 발생 : 정당 계약자 및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모두 주택 소유로 봄
 - 접수 결과 미달 발생 : 정당 계약자 주택 소유,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주택 소유 아님.(단, 정당 계약을 포기하고 잔여세대로 계약하는 경우 주택 소유로 봄)

IV. 청약 신청방법

■ 특별공급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현장(건본주택) 청약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 청약 신청은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에서만 가능합니다.(스마트폰 청약접수 불가)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 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 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표(초)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주택 공급 신청 내용과 청약 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구 분		신청 접수일	신청방법 및 이용시간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2020.01.02(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 - 접수시간 08:00 ~ 17:30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2항과 3항에 의거 본 아파트의 특별공급 현장접수는 불가합니다.

■ 인터넷 청약 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 ⇒ 「APT청약신청」 ⇒ 「특별공급」 ⇒ 「주택명 선택 : 개포프레지던스자이」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특별공급 종류 선택」 ⇒ 「특별공급 자격 확인」 ⇒ 「주택형 선택」 ⇒ 「거주지 입력」 ⇒ 「청약통장 자격 확인」 ⇒ 「특별공급별 선정 기준 입력」 ⇒ 「연락처 등 개인 정보 입력」 ⇒ 「청약 신청내역 확인」 ⇒ 청약

■ 일반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구 분		신청 접수일	신청 방법
일반공급	1순위	해당 지역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PC 또는 스마트폰)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국민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p>※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기업, KB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p> <p>※ 아래 "인터넷 청약 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기타 지역 (서울특별시 1년 미만 / 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2순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1순위 청약 일정 분리에 따른 청약 시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거주자는 1순위 "해당 지역" 접수일에만 청약 가능하며, "기타 지역" 접수일에는 청약 불가합니다.(위반 시 부적격 처리)
- 서울특별시 1년 미만,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는 1순위 "기타 지역"으로 접수합니다.("해당 지역"으로 접수 시 부적격 처리)
- "해당 지역(서울)" 1순위에서 청약 마감 시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다른 주택의 청약신청 및 당첨이 불가합니다.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방법 : 거주 개시일(KB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 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인터넷 또는 은행 창구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 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 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서류 제출 기간 내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주택 공급 신청 내용과 청약자격 대조 후 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2you.com) 및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을 제외한 쏘 은행 청약자)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청약 시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접속 ⇒ 「APT청약신청」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스마트폰 청약 시 : APT2you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아파트투유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청약 시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특화 서비스 「주택청약」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스마트폰 청약 시 : KB스타뱅킹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KB스타뱅킹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청약/채권 - 신청」 ⇒ 「주택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p>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p>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 창구 청약

-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 청약 순위 접수 방법 : 청약 접수 당일 아래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 청약 접수(청약접수 가능 시간 09:00~16:00)

구 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p>본인 신청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공급 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 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여권 / 외국 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p>제3자 대리 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p> <p>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 공급 신청 위임용) 단, 재외 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 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 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서류 제출)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 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 공급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 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이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 공급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 공급 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V. 당첨자발표

■ 당첨자발표 일정

구 분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특별공급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0.01.13(월) 확인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개별 조회) (www.ap2you.com) 또는 APT2you 앱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는 금융결제원에서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배정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당첨자 중 부적격 통보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적격자임을 확인한 후 계약 체결하며, 부적격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이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 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 여부는 아래 안내를 참고하시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 청약자)	KB국민은행(KB국민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0.01.13(월) ~ 2020.01.22(수) (10일간)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접속 → 청약 조회 → 당첨조회(최근 10일) APT2you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 확인 KB스타뱅킹 앱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 메뉴 - 조회」→ 「청약 당첨 사실 주택별 조회」
전화(ARS)	서비스 종료	전화 1588-9999(서비스코드 9→1→3)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주택청약 신청 시 휴대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0.01.13.(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KB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KB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금융결제원 전자금융공동망 ARS(국번없이 1369)를 통한 주택청약 당첨조회 서비스가 2017.6.15.부터 종료되었으며, 휴대폰 문자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 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 여부는 당첨자 발표 서비스 등을 이용하시어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VI.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 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상기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 계약 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 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제출 기간 및 장소

구분	서류 제출 기간	서류 제출 장소
정당 당첨자 (특별공급 / 일반공급)	2020.01.14.(화) ~ 2020.01.19.(일) 6일간, 10:00 ~ 16:00	개포프레지던스자이 견본주택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19 자이갤러리 1층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제출서류

구분	서류 유형		해당 서류	발급 기준	추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서류		○	무주택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인터넷 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 등본상 공급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단독세대일 경우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기본증명서	자녀	자녀의 출생신고일 증명 필요시 "상세"로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 진단서)제출 (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이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청약 신청자가 「한 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 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도 거주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구분	서류 유형		해당 서류	발급 기준	추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기본증명서	자녀	자녀의 출생신고일 증명 필요시 "상세"로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 진단서)제출(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이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 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 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아래 [소득증빙서류] 참조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비속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자녀	만30세 이전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일반공급 당첨자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비속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직계비속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1주택 실수요자 주택 처분 약약서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경우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본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함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인터넷 청약 시 당첨자에 한하여 제출)**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②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표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해당직장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근로계약서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②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원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본) 제출	* 세무서
	신규사업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원본)	① 국민연금 관리공단 또는 세무서 ② 세무서 또는 등기소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법인등기부등본(원본)	① 세무서 ②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③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소득사실없음)	① 견본주택에 비치 ② 세무서 또는 홈텍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전원의 합산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VII.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1차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서류와 해당 추가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0.01.28(화) ~ 01.30(목) 3일간 , 10:00 ~ 16:00	개포프레지던스자이 견본주택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19 자이갤러리 1층

※ 아래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20세대 미만의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 제한 없이 임의 분양하며, 20세대 이상의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 재공고 후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 기관의 전산 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 참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④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좌 부활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 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 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합니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 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의 신청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계약 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특별/일반공급)		○	자격검증서류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일체(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추가 개별통지 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건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제출자는 본인서명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등록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 주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해당 주택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주택	주택공시가격증명원(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포함)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주택	
대리인 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외 모두)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	위임장	청약자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 거주사실 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상기 제 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1차 계약금	국민은행	006001-04-318546	개포주공4단지재건축정비사업조합(외1)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국민은행	006001-04-318559	개포주공4단지재건축정비사업조합(외1)	모계좌

※ 분양대금 1차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 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2차 계약금부터는 계약 체결 시 공급 계약서에 부여되는 세대별 가상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101동 1403호 홍길동: 1011403홍길동 / 102동 601호 홍길동: 102601홍길동)
 ※ 상기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 계좌(모 계좌)이며, 2차 계약금부터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 계좌에서 상기 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 개인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 계좌)는 계약 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납부 일자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관리 계좌(1차 계약금) 및 세대별 가상 계좌(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건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분양가 9억원 이하의 주택형의 경우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 가능 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재외 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 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으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 정책, 대출 취급 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 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의 책임은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 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부의 정책에 따라 분양가 9억원 초과 세대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보증 대상이 아니며, 은행권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본 주택 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개인의 주택 소유, 대출 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 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양대금 미납부시 공급 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 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등 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출 취급 기관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 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2차 계약금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시장의 정책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알선한 입주지정 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입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 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 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 취급 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 취급 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상담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VIII. 추가 선택 품목 [유상 옵션]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45	49	59A	59B	59C	78A	78C	84A	102A	102B	114A	114B	114C
공급금액	2,300,000	2,500,000	12,600,000	12,000,000	12,200,000	14,700,000	13,900,000	15,300,000	18,400,000	16,700,000	21,300,000	16,900,000	21,200,000
계약금(20%)	460,000	500,000	2,520,000	2,400,000	2,440,000	2,940,000	2,780,000	3,060,000	3,680,000	3,340,000	4,260,000	3,380,000	4,240,000

※ 상기 주택형 중 39타입은 설계 특성상 발코니 확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으로,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및 건본주택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확장 공간 제외 발코니의 위치는 홈페이지 및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타입의 경우 발코니확장 미선택시 다른 공간 유상옵션 선택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유상옵션 선택 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관련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계약금 (20%)	중도금 (20%)	잔금 (60%)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 시	분양대금2차중도금일	입주지정기간	국민은행	006001-04-318562	개포주공4단지재건축정비사업조합(외1)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관련 공사비 관리계좌(모계좌)로서, 중도금부터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 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 개인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예시:101동 1403호 홍길동: 1011403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동: 102201홍길동)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 계약 시 상기 계좌로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수표) 수납 불가)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별도의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추가선택 품목

• 현관중문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39	45	49	59A	59B	59C	78A	78C	84A	102A	102B	114A	114B	114C
공급금액	1,980,000	1,980,000	1,980,000	1,980,000	1,980,000	1,980,000	1,980,000	1,980,000	1,980,000	1,980,000	1,980,000	1,980,000	1,980,000	1,980,000
계약금(20%)	396,000	396,000	396,000	396,000	396,000	396,000	396,000	396,000	396,000	396,000	396,000	396,000	396,000	396,000

※ 현관 중문 선택 시 신발장의 크기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마감재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39	45	49	59A	59B	59C	78A	78C	84A	102A	102B	114A	114B	114C
공급금액	3,130,000	3,930,000	4,290,000	4,480,000	4,350,000	4,480,000	5,880,000	5,750,000	6,080,000	7,690,000	6,950,000	8,620,000	7,690,000	8,550,000
계약금(20%)	626,000	786,000	858,000	896,000	870,000	896,000	1,176,000	1,150,000	1,216,000	1,538,000	1,390,000	1,724,000	1,538,000	1,710,000

• 복도아트월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59A	59B	59C	78A	78C	84A	102A	102B	114A	114B	114C
공급금액	1,280,000	1,110,000	1,230,000	940,000	880,000	1,460,000	1,920,000	1,340,000	1,980,000	1,520,000	1,870,000
계약금(20%)	256,000	222,000	246,000	188,000	176,000	292,000	384,000	268,000	396,000	304,000	374,000

• 슬라이딩 불박이장(침실1)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59A	59B	59C	78A	78C	84A	102A	102B	114A	114B	114C
공급금액	2,700,000	2,700,000	2,700,000	3,020,000	3,020,000	2,900,000	3,140,000	3,380,000	3,710,000	2,380,000	3,700,000
계약금(20%)	540,000	540,000	540,000	604,000	604,000	580,000	628,000	676,000	742,000	476,000	740,000

• 공간옵션 AL 슬라이딩도어(침실2)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102B	114B
공급금액	1,610,000	1,610,000
계약금(20%)	322,000	322,000

•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계약금 (20%)	중도금 (20%)	잔금 (60%)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현관중문, 바닥마감재, 불박이장 등	계약 시	분양대금2차중도금일	입주지정기간	국민은행	006001-04-318533	지에스건설(주)

※ 계약금 20%, 중도금 20%, 잔금 60%입니다.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관련 공사비 관리계좌(모계좌)로서, 중도금부터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 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 개인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예시:101동 1403호 홍길동: 1011403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동: 102201홍길동)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 계약 시 상기 계좌로 입금 후 입금증 건본주택 제출.(건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수표) 수납 불가)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별도의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가전 옵션 품목[유상 옵션]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해당 주택형	선택안		설치장소	공급금액	비고
39	2대	선택1	거실 + 침실1	3,400,000	
45 / 49	2대	선택1	거실 + 침실1	3,400,000	
	3대	선택2	거실 + 침실1 + 침실2	4,630,000	
59A / B / C	2대	선택1	거실 + 침실1	3,520,000	
	3대	선택2	거실 + 침실1 + 침실2	4,890,000	
	4대	선택3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6,300,000	
78A / C 84A	3대	선택1	거실 + 주방 + 침실1	4,890,000	
	4대	선택2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6,300,000	
	5대	선택3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8,000,000	
102A / B	3대	선택1	거실 + 주방 + 침실1	5,160,000	
	4대	선택2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6,390,000	
	5대	선택3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8,090,000	
	6대	선택4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9,320,000	
114A / B / C	3대	선택1	거실 + 주방 + 침실1	5,170,000	
	4대	선택2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6,870,000	
	5대	선택3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8,100,000	
	6대	선택4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9,660,000	

※ 시스템에어컨 전 주택형이 선택 가능하며, 상기 주택형별 선택 유형 중 1개 타입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타입별 시스템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 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에어컨 가동 시 발생하는 응축수 배수를 위해 설치되는 드레인 배관이 일부 벽체에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 상기 침실 표기는 카탈로그 기준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의 출시, 시장 상황의 변화 등으로 당초 계약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질이상의 타 모델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전옵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해당 주택형	품목	모델명	제조사	공급금액	비고
전주택형	빌트인 냉장고	S711SI24B (홈바형)	LG전자	5,750,000	
		S691SI24BS2 (디스펜서형)		7,650,000	
		S691SI15B (시그니처 얼음정수기냉장고)		14,900,000	
		CF18+CL24 (시그니처 컬럼냉장고)		21,500,000	
	빌트인 김치냉장고	K221PR14BR		1,450,000	59TYPE 이상만 해당됨.

※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 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 옵션 빌트인 냉장고는 상기 4가지 TYPE 중 1가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 주방가전 선택 품목은 주방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주택형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해당 주택형	품목	선택안	설치장소	제조사	공급금액	비고	
전주택형	시스클라인	1대	선택1-1	거실, 주방 중 1대	자이에스앤디(주)	710,000	
			선택1-2	침실 중 1대		842,000	
		2대	선택2-1	거실, 주방		1,420,000	
			선택2-2	거실(또는 주방) 1대, 침실 중 1대		1,552,000	
			선택2-3	침실 중 2대		1,684,000	
		3대	선택3-1	거실 1대, 주방 1대, 침실 중 1대		2,262,000	
			선택3-2	거실(또는 주방) 1대, 침실 중 2대		2,394,000	
			선택3-3	침실 중 3대		2,526,000	
		4대	선택4-1	거실 1대, 주방 1대, 침실 중 2대		3,104,000	
			선택4-2	거실(또는 주방) 1대, 침실 중 3대		3,236,000	
			선택4-3	침실 중 4대		3,368,000	102㎡A,B 114㎡A,B 타입만 해당
		5대	선택5-1	거실 1대, 주방 1대, 침실 중 3대		3,946,000	
			선택5-2	거실 (또는 주방) 1대, 침실 중 4대		4,078,000	102㎡A,B 114㎡A,B 타입만 해당
		6대	선택6-1	거실 1대, 주방 1대, 침실 중 4대		4,788,000	102㎡A,B 114㎡A,B 타입만 해당

※ 시스클라인은 선택 옵션에 따라 세대 내 공기 청정화 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스클라인은 한국공기청정협회(CA) 지정한 소음 기준에 부합하나, 개인별 소음 인지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클라인은 천장에 빌트인 형태로 설치되는 제품으로 천장에 설치되는 기타 장애물(스프링쿨러, 감지기 등)과 이격하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공기청정기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포프레지던스자이에 기본 제공되는 거실 컨트롤러가 거실과 주방 시스클라인(천장형 공기청정기)까지 제어 가능하여 거실과 주방 선택 시 컨트롤러 가격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 침실 선택 시 매립형 컨트롤러 (난방 기능 포함. 난방 컨트롤러 대체)를 침실별 각 1대씩 제공합니다.

· 가전 옵션 품목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시스템 에어컨, 주방 가전 등	납부계좌, 납부일정 및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추가 선택품목 공통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상기 유상옵션은 계약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중도금 납부 이후에는 유상옵션 공급주체 및 시공사의 동의 없이 계약 해제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시공상의 일정관계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카탈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본 공동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 선택 품목 중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 옵션 품목(바닥마감재, 현관중문, 가구, 공간옵션 등)은 GS건설 주식회사에서 시공할 예정이나,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주방가전 등 가전옵션은 자이에스앤디(1661-6441)에서 계약체결 및 시공예정으로 납부계좌가 상이합니다.

IX. 기타 계약자 안내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당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1조 제3항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지정 개시일 전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3년 2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기로 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기 납입한 선납 할인금액은 실입주 예정일에 따라 정산합니다.)
-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 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관리/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경비실, 근린생활시설 등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차장 차로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6~8M	2.3~3M	3M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회사명	감리금액	비고
건축 / 토목 / 기계	(주)아이티엠코퍼레이션 (주)경진 / (주)청우종합	13,033,900,000	
소방 / 정보통신	(주)세정이에프씨	1,116,500,000	
전기	상지이앤씨(주)	1,469,368,603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사업주체명	개포주공4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법인등록번호 : 120-82-11490)
시공업체명	지에스건설(주) (법인등록번호 : 110111-0002694)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251,691,200,000원	제 01212019-101-0007300 호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본조에서 “보증회사”라 칭함)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1.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1) 주채무자에게 부도, 파산,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4) 시공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2.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 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 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1.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 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해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14) 보증채권자가 「주택분양보증약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택분양보증약관」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2. 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약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공급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공사 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 사업장의 공사 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의무사항 적용여부)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의무사항 이행여부	고기밀 창호	적용	외기에 직접 면한 창호의 기밀성능은 KS F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2등급 이상 제품 사용
	고효율기자재	적용	변압기, 전동기, 펌프 고효율 기자재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거실, 침실, 주방 등에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를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세대 내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 세대 내 1개소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조명기기로 정의되는 제품을 세대 및 공용부위 내 사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화장실 내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거실, 침실별 온도조절장치
	절수설비	적용	[수도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 2에 따른 절수형 수도설비설치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개포주공4단지아파트
건축주	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89번지 일원
층 수	지하 4층, 지상 35층 / 3375세대
연면적	639,082.240㎡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편의시설
설계자	㈜종합건축사사무소건원

[인증 개요]

인증번호	제2019-2316호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유효기간	2019.08.27. ~ 사용종결일

[인증 등급]

인증등급	최우수등급(공동주택)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05호
인증기준	환경부고시 제2014-213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최우수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분야별평가]

2019년 08월 27일

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7. 27.>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공동주택명 : 개포주공4단지아파트
- 신청자 : 개포주공4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경비사업조합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89번지 일원
- 성능등급

가. 소용 관련 등급

성능별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경량중력을 차단성능		★★★★
중량중력을 차단성능		★★
벽상층 광채투수율		★★★★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외부소음	교통신호도로, 풍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별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가변성		★★★★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공용부분	★★
내구성		★★
지속가능한 자원활용	주요구조부재 재사용	해당없음
	(비모래성석재) 재사용	해당없음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별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생태친화적		★★★★
조경	자연지반 녹지율	★★
	연계된 녹지 조성	해당없음
	피로율 조성	★★★★
생태적가치	기초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인정하지 않음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해당없음
세대내 일조보통		*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 저감율 제도의 적용	★★★★
	연회배기 환기설비 확보여부	★★★★
과반용 확보 여부		해당없음
폐기물 최소화	생활용 가구재 사용억제 대책의 타당성	*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	생활용 가구재의 분리수거 추진을 쓰레기 제도	★★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유해화학 제품사용을 위한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여부	★★★★
우수주택 설계	대규모 연소배출량 저감표시	★★★★
	우수주택 품질대체의 타당성	해당없음
수자원 절약	생활용 빗물 수집·저장·처리 타당성	★★★★
	우수 인증	★★★★
	중수도 설치	해당없음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별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커뮤니티 참여 및 사생활 공간의 조성수준		★★★★
로케이션 도로	단지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
	위급분위기 전용도로 네트워크의 연계여부	*
교통편의성	대중교통역과의 근접성	★★★★
	주변기 본연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
	동시출입 및 지역주행과 단지 중심거리 거리	★★★★
사회적 약자의 배려	전용부분	*
	공용부분	*
충전서비스	충전서비스 운영시스템	*
운영환경	감, 열, 습, 자중으로 조광장치	★★★★
	태양광	*
향정미안	향정미안 콘텐츠	*
체계적인 현상관리	현상관리 관련 현상관리 계획의 타당성	★★★★
효율적인 현상관리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
	사용자 역할명 제정	★★★★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별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화재소양	감지 및 경보설비	*
	제연설비	*
	내화 성능	*
피난안전	수평피난거리	*
	최도 및 계단 총폭	*
	피난거리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19년 08월 27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장수명 주택 인증서

장수명 주택 인증서

- 인증번호: 장수명 제2019-176호
- 신청자(사업주체): 개포주공4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경비사업조합
- 건축물명: 개포주공4단지 주택재건축경비사업 아파트
-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4(개포동, 주공아파트 4단지내)
- 인증등급:

성능별주	점 수	등급
1) 내구성	15점	*
2) 가변성	19점	**
3) 수리용이성	9점	*
전용	9점	*
공용	9점	*
총합점수 (1 + 2 + 3)	총 100점 중 51점	□ 최우수 □ 우수 □ 양호 □ 일반

「주택법」 제38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명 주택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19년 5월 20일

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서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건축물 개요	인증개요
건축물명	개포주공4단지 주택재건축 경비사업
인증번호	19-주-에-1-0261
준공연도	2021년 12월 01일
주소	개포동 189
층 수	지하 4층 지상 35층(35개동)
연면적	641,282.5(㎡)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설계자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인증등급

인증등급 :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h/㎡·년)	요구량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비량(㎾h/㎡·년)	등급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kg/㎡·년)	배출량
92.4		1+	+	24.4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64.1	70.0	63.7	11.9
급탕	30.7	37.7	27.9	6.3
조명	7.6	7.6	20.8	3.5
기계		5.8	15.9	2.7
합계	92.4	121.1	118.3	24.4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 :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 에너지소비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은 풍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19년 08월 22일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시공,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동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이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법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
	인·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홍보물은 2019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변경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에 계획된 근린공원 및 도서관 부지에는 서울시 정책에 따른 미래문화유산으로 기존 아파트동(429,445동)의 일부가 존치될 수 있습니다.

	<p>사업지 및 도로 단지 주변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후 양재대로 구조 개선 사업(대모 지하 차도 구간, 공사기간 : 2018.07~2024.12.예정) 공사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동측에는 양재대로, 남서측에는 삼성로, 북동측에는 영동대로, 북서측에는 삼성로4길과 영동대로3길이 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 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당 사업지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단지 남동측 양재대로, 남서측 삼성로 및 북동측 영동대로변에 높이 7~12M의 방음벽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준공시점 소음영향평가에 따라 방음벽의 높이 및 설치 유무가 최종 결정됩니다. •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쪽 대지 변은 양재대로보다 낮은 저층부로 되어 있으며,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휀스 (방음벽 포함) 또는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지내 옹벽 지지를 위해 지하 매설물이 설치될 경우 영구 점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본 단지는 단지 북서측에 개포초교, 근린공원, 도서관, 공공청사가 인접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됩니다. •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및 기반시설 등은 해당관청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양도 예정이며, 조성계획 및 설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공공하수시설이 설치되며 해당 시설은 향후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p>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유치원은 사설 시설로서, 향후 운영여부 및 용도, 설계내용 및 외부 디자인 등은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단지</p>	<p>동별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415동 전면, 407동 및 414동 인근 433동,434동 전면 및 432동 인근에는 발전기용 급배기 D.A가 설치되며 발전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 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창호 및 난간 사양으로 인해 전세대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합니다. • 단지내·외에 레벨차가 있는 구간에는 자연석 쌓기, 비탈면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은 주행 차량 또는 보행자로 인해 생활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01동, 432동, 433동, 434동은 임대세대가 배치되어 있고 복도, 계단 및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을 분양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409동, 410동, 411동, 412동, 419동, 426동, 427동, 429동, 430동, 435동은 인접한 도로보다 지반 레벨이 낮게 계획되어, 저층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401동, 403동, 405동, 407동, 415동, 416동, 422동, 423동, 432동, 433동 북서측에는 초등학교, 근린공원, 도서관, 공공청사가 위치할 계획으로 소음 피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26동, 427동은 하부에 주민공동시설이 계획되어 주변동들과 동출입 레벨 및 여건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421동 1~2층에 어린이집, 422동 1층에 경로당이 위치하여 인접한 세대는 시설 이용에 따른 소음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19동 35층에 스카이 라운지 및 루프탑 인피니티풀이 위치하여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401동 하부 및 433동, 434동, 435동 인근에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며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및 소음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407,413,419,420,426,427,428,433,434동 인근에는 펌프실, 열교환실, 지열 기계실, 급·배기 D.A가 설치되므로 FAN 가동시 소음 및 진동, 풍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 이송설비 집하장이 434동 하부 지하층에 설치되며, 또한 435동 코아내부 및 옥상에 음식물 쓰레기 집하장용 배기연도, 배기시설 및 급기 DA가 설치되어 인접 세대는 소음 및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06,425,427동 인근에는 수영장용 기계실 및 D.A가 설치되고, D.A도 설치되므로 장비 가동시 소음 및 진동 그리고 증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p>단지계획 (설계, 디자인, 마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의 구성 및 상세 내용은 인·허가 과정이나, 발주처의 성능 개선을 위한 의사 결정,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진동, 악취발생,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경시설(수공간 등),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빛공해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간별 사업부지 단차 구간에 조경석 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조건, 미관,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상부에 공용부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되며, 위치는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동 배치 및 일조량에 따라 일부 동 혹은 전체 동에 분산 설치됩니다.)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태양광 집광판,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 등, 피뢰침, 방공호 및 대공포진지 군사시설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비내력벽은 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동은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설치되지 않으며, 추후 행정관청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되어 있고,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경 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내 시공된 사항과 달리 결로 방지를 위해 실외기실 측벽벽체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이에 따라 발코니 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동 전면 또는 후면에 외부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인근 세대는 소음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단지 모형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배치상 레벨차에 의해 데크로 분할 계획되어 있으며, 각 데크의 수직면 및 인접 대지와의 레벨차에 따른 옹벽면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방용 안전매트 구간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되지 않으며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식재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에 인접한 유아 놀이터는 어린이집 운영에 따라 입주자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402동,406동,418동,412동,416동,420동,421동,427동,432동,434동 옥상에는 5G 이동통신용 옥외 안테나와 중계장치가 설치되며 지하주차장 일부 뒤편에 5G 이동통신용 중계장치가 설치됩니다. 5G 이동통신 안테나,중계장치 등 중계설비는 단지여건, 신호강도,기간통신사업자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설치위치가 변경되거나 증설될 수 있습니다. • 외장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외관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내 건물(아파트 주동,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외관 디자인(색채, 입면패턴, 마감재, 장식물, 옥상 구조물 등), 조경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옹벽 및 난간의 형태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및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세대의 외벽 및 지붕 등에 장식물 및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동 저층부는 석재 또는 유리마감, 금속마감, 페인트로 마감되며 주동 형태 및 위치에 따라 각 재료별 적용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하고,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 진입부에는 문주가 설치되며 주 진입부에 위치한 주동의 일부 저층세대에서는 문주설치로 인한 세대 조망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일부 동 측벽에는 금속 및 유리가 마감될 수 있으며, 조명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측벽의 특화 및 마감계획은 인·허가 및 현장시공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벽에 유리마감재(커튼월룩) 및 몰딩이 설치되며 설치 면적과 위치는 동별로 상이합니다. 동위치에 따라 일부동은 빛의 반사로 인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은 빔공해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 및 작동에 제약이 있거나 위치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 (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옥외 엘리베이터 등)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공용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별 위치 - 주민공동시설 : 자이안센터(실내운동시설, 게스트하우스 등) 419동, 425동, 426동, 427동, 428동 지하층, 스카이라운지 419동 35층, 루프탑 인피니티풀 419동 옥상층 자이안스터디(작은도서관, 키즈클럽, 스튜디오 등) 413동 및 418동 지하층 자이안컬쳐(문화강좌실, 동호회실 등) 432동 및 433동 지하층 맘스스테이션 406동 1층 및 434동 인근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408동 지하층, 경로당 422동 1층, 어린이집 421동 1~2층 - 근린생활시설 : 401동 지하층 및 433동, 434동, 435동 인근 • 주민공동시설과 부대복리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이동가구, 비품, 서적,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구성 및 상세 내용은 인·허가 과정이나, 발주처의 성능 개선을 위한 의사 결정,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실 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지하2층에 쓰레기 야적장 및 분리수거장, 재활용 보관소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내 경로당, 휘트니스, 필라테스 공간에서 입주 전후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일정기간 운영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전기세 등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내 사우나용 연료전지 연도가 외부에 설치 될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소음 열기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루프탑 인피니티풀은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옥외시설로 별도의 난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속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해 주변 인접 동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설치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고 해당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삼성로변에 면해있는 건축한계선(8m)은 개포택지구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시행지침에 따라 보행공간 및 휴게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며, 준공 후 외부인에 개방되어,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p>공용설비 및 시스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공조시스템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빗물 재활용을 위해 지하저수조 및 빗물저류조가 설치되어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및 근린생활시설에는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하 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Top Light, 제연헬륨, D·A)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고, 무인택배함은 동별 1개소 지하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p>주차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 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총 6,019대(아파트 5,881대, 근린생활시설 134대, 유치원 4대)로 전체 지하에 계획되어 있습니다.(경차 및 장애인주차 포함) • 구조 형식 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직하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 ~ 지하 4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단지 특성상 각 동별 지하주차장 이용 층수 및 주차 여건, 동출입구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은 공사 여건에 따라 구조 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급속 9개소, 완속 52개소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하 2층 주차장은 전동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하며, 지하 1층 주차장은 일부 동에서만 직접 출입이 가능합니다. • 지하 주차장 층고는 층별 및 구간별로 상이하며, 지하 2층 주행 유효높이는 2.9m로 이를 초과하는 대형 차량의 진입은 불가합니다.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주차출입구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2개소입니다. • 아파트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장, 재활용품 보관소, 음식물 쓰레기 이송설비 집하장(장비포함) 및 무인택배 보관함이 지하2층 각 동 지하 및 주차장에 계획되어, 쓰레기 수거차량 및 택배차량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게 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지하층 각 동 하부공간에 세대창고가 계획되어 있으며, 동별로 구획크기 및 접근동선 등 이용여건은 상이합니다.
	<p>근린생활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며,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이용차량에 의해 출입구 차단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은 각 근린생활시설용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의 조업을 위한 차량 등이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은 아파트와 분리되어 있으나, 아파트 주출입구를 같이 사용하며, 지하층에 아파트 주차장과 연결되는 연결통로가 설치됩니다. • 근린생활시설 옥상 및 인근 동에 실외기 및 탈취설비가 배치되어 인접세대는 소음, 분진 등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p>평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건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세대의 천장 높이는 2,400mm로 시공됩니다. • 입주 시 세대 내에 침실별 가구(장롱, 불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 •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단위세대 현관 및 현관창고,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건축 인허가에 의해 같은 주택형이라도 발코니 설치 내용 및 서비스 면적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축 인허가에 의해 세대 내부벽체가 건식벽체 및 조적벽체로 시공되어 소음 및 벽체 활용(그림 부착 등)에 다소 불편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단위 세대</p>	<p>발코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코니는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홍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외부 측벽 및 천장에 최소 결로 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 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환기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어컨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화재 등 유사시에는 실외기실 내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통해 인접세대로 대피하거나, 별도의 대피공간에서 구조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의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기본형(비확장) 세대도 건축 인허가에 따라 발코니 외부 새시가 단창으로 설치되며, 입주 후 개별 확장 시 새시 변경(이중창)으로 인한 아파트 전체 입면 훼손 및 하자 유발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인접 세대가 확장형인 경우, 기본형(비확장) 세대 발코니에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 크기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창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시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외부 창호의 크기는 추후 발주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의 폭,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창호는 유리난간창호(별도의 철재난간이 없는 일체형 타입)으로 이삿짐 차량을 이용한 운반 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조치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아파트 외부 창호는 각 세대 내 실별로 창호 사양 및 디자인, 기능이 상이하므로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실 및 침실 창호 등의 개폐창을 제외한 창은 난간 역할을 하는 고정창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옥외공간 (테라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위세대의 옥외공간은 설계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용공간으로 다른 세대의 진입은 불가능하나 해당 세대의 전용공간이 아니므로 공용설비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한 진입 요구 시 개방하여야하며, 등기를 포함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합니다.(집합건물법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옥외공간 바닥은 콘크리트 마감이며, 바닥레벨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옥외공간에는 우수 또는 배수 드레인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수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옥외공간 진입을 위해 단위세대 발코니 외부 창호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고 옥외공간 외곽에 난간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재질 및 색상,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준공 시 입주자에게 인도하는 옥외공간 건축 기본마감(방수, 단열, 무근콘크리트) 외에 입주자의 추가적인 시공(데크, 타일마감 등)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주자는 옥외공간 상부의 허용하중, 방수, 배수에 대한 기본 설계조건에 대해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하며 공사 시 인접세대 및 하부세대에 통보 후 동의를 구하고 시공하여야 합니다. 옥외공간에는 조경용 수전 및 배수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부위에 물막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옥외공간 출입창호는 폭우 시 수해 방지를 위해 창호 하부턱이 높게 시공되어 이용에 다소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p>개방형 발코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방형 발코니의 옥외공간 바닥은 타일 마감이며, 바닥 레벨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방형 발코니 출입을 위해 외부 창호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고 오픈발코니 외곽에 난간이 설치되며, 재질 및 색상,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준공시 입주자에게 인도하는 개방형 발코니의 건축 기본마감(방수, 무근콘크리트, 타일) 외에 입주자의 추가적인 시공(데크, 녹화 마감 등)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주자는 개방형 발코니 상부의 허용하중, 방수, 배수에 대한 기본 설계조건에 대해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하며 공사 시 인접세대 및 하부세대에 통보 후 동의를 구하고 시공하여야 합니다. 개방형 발코니 출입창호는 폭우 시 수해 방지를 위해 창호 하부턱이 높게 시공되어 이용에 다소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개방형 발코니에는 수전이 설치되지 않으며, 하부턱 벽체에 오버플러우용 배수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p>가구 및 마감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붙박이 가구(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으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등)는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석재류, 타일류, 상판류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자재 나눔부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택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계획(디자인, 크기, 도어 개수 등),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실 출입문(부부, 가족)은 본 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거실 아트월은 동간 사생활보호를 위해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냉장고장 형태는 옵션사항이며, 이에 따라 냉장고장이 상이하게 설치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미선택시 냉장고(입주자 직접 설치 가전)가 제품 사양에 따라 일부 돌출될 수 있습니다. 세대별 공간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현관 중문은 주택형별 사양(개폐타입, 사이즈, 색상 등)이 다르며, 본공사 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상옵션 품목인 현관중문 설치 유무에 따라 신발장의 형태나 규격, 설치위치, 도어 개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PVC 단열도어는 본 시공 시 동등 성능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p>전기기계설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욕실 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기 디퓨저,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시공하는 에어컨 외에 입주자가 설치하는 추가 에어컨은 실외기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추가 설치 시 별도의 실외기 고정가대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제어시스템 및 온도, 환기조절기 등은 시스클라인 선택유무 및 내부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 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층 세대 하부에 각 동 제연을 위한 급기구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외벽에 가스 입상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계량기는 실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욕실, 드레스룸 및 펜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침실용 온도조절기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자이 스마트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 OS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이 원패스 카드는 세대당 2매가 제공되며, 카드 디자인은 입주 시 확정됩니다. 진공을 이용한 세대내 음식물 쓰레기 이송설비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리 부주의로 인한 냄새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미건립 된 세대에 대한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의 위치 및 수량은 단위세대 평형, 타입, 옵션, 아트월 위치 등에 따라 변경됩니다. 에어컨 배관은 전실 천장형 배관으로 설치되며, 벽부형 에어컨매립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벽부형이나 스탠드형 에어컨 설치시에는 배관이 노출되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견본주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유상옵션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견본주택 내 설치된 소방 화재감지기는 견본주택용이므로 본 공사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기타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부동산 계약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가격이 3억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현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89번지 일원

주택전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19(자이갤러리 1층)

분양문의 1544-6651

홈페이지 : <http://gaepo-xi.com>

총 3,375세대 중 일반분양 255세대

시행 : 개포주공4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시공 : GS건설